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】

의안 번호	230
----------	-----

2023. 9. 11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8. 30. / 한근수 의원 등 10명
나. 회부일자 : 2023. 8. 30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9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·운영 및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안건은 배달원, 대리운전 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열악한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

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,

- 안 제4조에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 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노동 취약계층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며, 경기도 내에 현재 13개의 쉼터(간이쉼터 포함)를 운영하고, 2023년 8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.

〈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 〉

2022. 12월말 기준

지역	서울	경기	부산	경남	울산	대구	경북	광주	전남	전북	대전	제주
개소수	9	13	3	2	2	2	2	1	1	2	2	3

※ 경기도 현황 (출처 : 경기도노동권익센터)

- 거점쉼터 : 10개소 (광주, 수원, 하남, 성남, 시흥, 광명, 부천, 안양, 의왕, 포천, 안산)
- 간이쉼터 : 3개소 (고양2, 파주)
- 2023신규 : 8개소 (간이쉼터, 남양주, 용인, 성남, 안산, 파주, 광명, 이천, 구리)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